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10329
----------	-------

발의연월일 : 2025. 5. 1.

발의자 : 김용민의원 등 170인

주 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심우정)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심우정

직위 :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

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의 구체적 실현자이며 책임자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실천해야 하고 특히 범죄수사나 소추 그리고 기소 유지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헌법 제7조), 검찰총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침해적 공권력행사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방패로 하여 국민 전체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검찰총장은 검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자신도 권한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3항).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피소추자는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인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하고 피소추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피소추자는 아래와 같이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검찰총장으로서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하였다.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함으로써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한 것은 물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중단시키고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하였다.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검사 및 검찰청 지휘·감독을 고의로 회피하였다. 한편, 피소추자의 부당한 관여로 피소추자의 장녀는 외교부 취업에 특혜를 제공받았다.

피소추자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행위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함은 물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위배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또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검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의 원칙 위배(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은 물론(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한 것이다. 피소추자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수사와 내란 수괴 영장 집행에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및 본부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의식적으로 방임한 것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내지는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한다. 한편, 피소추자가 장녀 취업 특혜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위반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자로서 국회를 통하여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인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검찰총장은 탄핵대상에 해당하고(검찰청법 제37조), 검찰총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검찰총장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1.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대통령 윤석열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에서 경찰이 맡을 역할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하달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 한다)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제1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2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3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계엄사령부 포고령 제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

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위협하면서(계엄사령부 제5호),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재차 위협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장갑차가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군병력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관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 계엄군을 통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려 시도하였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

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 총기 등으로 무장한 대규모의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

후에 자신의 통제를 받는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주장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

나. 피소추자의 내란 가담 또는 목인 내지 방조 등

대통령 윤석열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핵심 서버들을 찾아 선정하고, 이어 방첩사 요원들이 서버 복사 혹은 반출을 시행하여, 그 다음 단계를 검찰과 국정원이 맡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송00 대령은 위 출동한 2명의 검사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박00 과장과 2024. 12. 4. 00:37경 1분 22초, 03:06경 2분 59초 통화(박00 과장 발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 헌법·법률 위반

피소추자는 법률전문가로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을 출동하도록 하거나 출동을 용인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도왔다. 그 결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에 일조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대검찰청 검사들을 헌법기관에 출동하도록 하여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이므로 내란행위의 지휘 내지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이다.

가사 피소추자가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검찰총장인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영역에서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도적 장치로서 보장하고 있다¹⁾.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통령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검찰총장에 대하여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2년의 임기제가 확립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영역에서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

의 내란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법 가담을 감독하고 지휘를 통해 이를 중지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중단시키고 진압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소추자가 대검찰청 검사들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을 용인하거나 지시하여 정치도구화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형법 제87조, 제91조)이다. 또한, 검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위반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몰각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2. 윤석열 구속기소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피소추자의 윤석열 기소 지연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로 2025. 1. 15. 10:33 고위공직자범죄

리고 전문성을 고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루어진 것임. 검찰청법 제6조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한 것 또한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음.

수사처에 의해 체포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5. 1. 23. 대통령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 요청하였다.

검찰은 2025. 1.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 24.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2025. 1. 25. 02:00경 곧바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첫 번째 신청과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하였다.

2025. 1. 25.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진바 즉각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구속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2025. 1. 26. 10:00경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2시간 40분 가량 회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검찰은 18:52경에 이르러서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소추자의 윤석열 석방지휘

2025.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이 2025. 1. 26. 09:07경 만료된 후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취소를 결정²⁾하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불복절차가 필요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였다.

다. 헌법·법률 위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의무가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3항). 또한,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7. 선고 2025초기619 결정은 구속기간 만료의 근거로 “①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② 구속기간 계산 시에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한다”라고 함.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부당한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본부장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 제2항).

따라서, 피소추자는 현직 대통령 구속 및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구속 기간 등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철저한 판단과 빈틈없고 신속한 대처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기존의 선례와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지방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피소추자는 형사소송법 제97조의 정당한 적용 청구로서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마땅히 보장하여야 하는 자이다.

피소추자는 법원의 영장연장신청 기각 결정 후에도 즉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구속기간을 소진하고, 구속기간 만료에 존각을 다투는 상황 하에서도 검사장 회의를 이유로 공소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재판 중 석방을 초래하였다. 이는 검

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의 원칙 위배(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또한, 피소추자는 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수하였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률 문언과 수십 년간 형성된 법리·실무에 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집행 지시를 하였다. 이는 피소추자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임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97조의 정당한 적용 청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그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한 것이다.

나아가 피소추자는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이나 방조를 한 자로, 피소추자의 행위는 검찰 지휘권을 남용하여 내란 수괴에 대한 인신 구속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위반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몰각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3. 내란 수사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수사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계엄을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켜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주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인 2024. 12. 8. 01:30경, 김용현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다. 그런데 김용현의 자진 출석 이전인 2024. 12. 6. 21:07경,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이 김용현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고, 그 직후 이진동과 김용현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은 2024. 12. 10. 김용현을 구속했으나,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의 수사에 필수적이므로 당연히 압수해야할 물품인 김용현의 비화폰을 압수하지 않았다.

나. 검찰의 대통령 경호처장·경호본부장 영장기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5. 1. 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사용을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5. 1. 18.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하였다.

특별수사단은 2025. 1. 24. 김성훈이 대통령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를 삭제 지시한 정황을 범죄사실로 대통령경호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며 보강수사 요구 후 반려하였다.

특별수사단은 2025. 2. 18. 김성훈과 이광우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이미 발부되어 집행된 ‘윤석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2025. 2.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 하에 서울고등검찰청에 김성훈과 이광우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 심의위원회는 2025. 3. 6. 심의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헌법·법률 위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의무가 있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3항). 또한,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피소추자는 국가적 위기를 야기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 공범의 내란죄에 대하여 검사와 검찰청의 중립적이고 적절한 수사 및 소추를 지휘·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소추자가 내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하여 내란 사건 담당이 아닌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김용현과 내통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직

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직권 남용(형법 제123조)한 것이다. 가사 피소추자의 적극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거부한 책임(형법 제122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은 피할 수 없다. 피소추자는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하고 피의자와 부당하게 접촉하는 직속 검사의 행위를 감독하고 지휘를 통해 이를 중지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또한, 피소추자가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도록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지휘한 것이라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직권 남용(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가사 피소추자의 적극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거부한 책임(형법 제122조)은 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기각한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은 서울고등법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례적인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받은 만큼³⁾, 피소추자는 국가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 내란죄 수사 및 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의자들에 대하여 정당

3) ‘전국 6개 고등검찰청별 영장심의 신청 접수 및 심의 결과 현황’ 관련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경 고검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2025. 2. 26.까지 경찰은 총 16건의 영장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의 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 영장의 발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감독하고 지휘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나아가 피소추자는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이나 방조를 한 자로, 피소추자가 위와 같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공범과 내통하거나 공범의 수사를 방해하여 내란의 공범들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검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위반이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몰각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4. 장녀 취업 특혜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배

가. 피소추자 장녀 취업 특혜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2024. 1. 25. ‘교육학·인문학·사회과학 등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를 자격요건으로 연구원 다급 공무원직 전형 채용 공고를 하였다.

피소추자의 장녀 심민경(이상 및 이하 “피소추자의 장녀”라고 한다)은 당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에 불과하여 석사학위 미소지자로 자격요건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위 국립외교부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다.

외교부는 2025. 1. 3.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및 영어 능통자’를 자격요건으로 연구원 나급 공무원직 전형 채용 공고를 하였다. 해당 절차에서 외교부는 최종면접을 본 1인을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그 후, 외교부는 2025. 2. 5. 동일한 전형의 채용을 재공고를 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및 영어 능통자’로 변경하였다.

피소추자의 장녀는 국제협력 전공자로 관련 실무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약 8개월 근무(2024. 3. 29. ~ 2024. 11. 30.)에 불과하여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위 재공고된 외교부 채용의 서류·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였다.

국립외교원이 연구원 다급 채용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채용한 사례 및 외교부가 동일한 전형의 채용 자격요건을 최초 공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변경하여 재공고 후 채용한 사례는 피소추자 장녀의 경우 외에는 전무하다.

또한, 피소추자의 장녀 채용 절차는 외교부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인사 기획관실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에서 진행되었다.

나. 헌법·법률 위반

피소추자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 등과 공모 하에 인사 담당자 등에게 채용 공고 변경 등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조건 미달 지원자인 피소추자 장녀를 채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한 것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 등에게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피소추자 장녀를 합격자로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형법 제137조)한 것이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를 수사할 직무상의 의무(검찰청법 제4조) 및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헌법 제7조 제1항)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몰각하여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타 국가기관의 인사에 관여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주어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다.

Ⅲ. 탄핵의 필요성

1.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찰총장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또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그 역시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소추자 탄핵의 필요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범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찰총장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질서의 구체적 실현자이며 책임자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적극 실천해야 하고, 검찰수사와 기소유지에 있어서 외압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도록 용인 내지 지시함으로써 검찰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이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시켰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담보하기는커녕,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하고, 검찰 특별수사 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였으며,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수사와 내란 수괴 영장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및 본부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의식적으로 방임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였다.

②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심대하다.

피소추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피소추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으므로 임기개시일부터는 국민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본분을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심각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하여 피소추자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추락시켰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 본연의 직무를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찰총장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15. 6. 17.자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 SBS, 2024. 12. 3.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
3. 한겨레, 2024. 12. 4.자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국회에 계엄군 진입 시작> 제하 기사
4. 한겨레, 2024. 12. 4.자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제하 기사
5. 연합뉴스, 2025. 3. 8.자 <[3보] 검찰, 구속취소 윤 대통령 석방지휘…체포 52일만에 풀려나>
6. JTBC, 2024. 12. 15.자 <[단독] “검찰에서도 올 거야…지원해줘” 여인형 ‘선관위 작전 지시’엔>
7. 민들레, 2024. 12. 16.자 <“계엄 때 선관위 서버 검찰이 맡기로”…검찰, 수사 손떼야>
8. 한겨레, 2024. 12. 24.자 <“선관위에 검찰도 온다고 했다”…방첩사 관계자들 진술 확보>
9. 한겨레, 2025. 3. 6.자 <[단독] 방첩사 대령, 계엄 직후 검찰·국정원 간부와 수차례 통화>
10. 뉴시스, 2025. 2. 6.자 <‘이진동 대검차장, 김용현 조사 전 통화 논란…’ 자진출석 설득 위해>
11. SBS뉴스, 2025. 2. 7.자 <대검 차장 첫 출석…‘김용현 통화’ 경위 추궁>
12. MBC뉴스, 2025. 2. 20.자 <‘깡통폰’만 가져간 검찰..비화폰은 김성훈 손에>

13. 뉴시스, 2025. 2. 24.자 <‘경찰,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 신청’>
14. 서울경제, 2025. 2. 13.자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세 번째 시도’>
15. 오마이뉴스, 2025. 2. 18.자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향한 경찰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16. 한겨레, 2025. 3. 7.자 <‘검찰 ‘김성훈 봐주기’ 중지부…고검 심의위 “구속영장 청구해야”’>
17. 헤럴드경제, 2025. 3. 1.자 <[단독] 3번 모두 기각 당한 김성훈 구속…서울고검 영장심의 ‘청구 적정’제로’>
18. 국민일보, 2025. 1. 16.자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19. 더 퍼블릭, 2025. 1. 25.자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제2의 오동운’?...성창경 “대통령에게 비수를”’>
20. 프레시안, 2025. 1. 26.자 <‘이성윤 “검찰, 한가하게 ‘회의쇼’ 할 때인가?”’>
21. MBC뉴스, 2025. 3. 8.자 <‘尹 앞에서 머뭇댄 검찰총장, 왜?...구속 취소 책임론도’>
22. 오마이뉴스, 2025. 4. 3.자 <민주당, 심우정 딸 채용 과정에 외교부 국장 개입 의혹 제기>
23. 경향신문, 2025. 3. 31.자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외교부 해명에...민주당 “궤변”재반박>